

‘26. 7.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도 사 업 소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73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이유

- 김제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격년 3단계, 30%씩 인상) 및 가정용·대중탕용 누진제 폐지를 통해 요금을 현실화하고 노후 하수도시설 정비 및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시기 명확화,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기준 신설, 사용료 체납 징수 절차 정비, 취약계층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하수도 요금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하수도 요금 인상 및 누진제 폐지 (안 별표1)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격년 3단계로 각 30%씩 요금을 인상하고, 가정용·대중탕용 누진제를 폐지하여 단일단가 체제로 전환
- 체납관리에 관한 조문 신설 (안 제16조의2 신설)
 -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연체금 부과 기준을 신설,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 발급 등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납부 방법 조문 신설 (안 제16조의3)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9조)
 -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 부과시기 및 납부시기를 명확히 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따른 감면 기준 신설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21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하수발생량 기준 정비, 단위단가 시 홈페이지 공고, 납부 시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 자구 수정 및 당해 연도에 공고된 단가 적용·부과 원칙에 대한 조항 신설
- 감면에 관한 단서 및 추가 감면 대상자 신설 (안 제22조)
 - 감면 사유 중복 시 가장 높은 감면을 적용
 - 감면 대상자 추가(수급자, 장애인, 20세 이하 자녀 둘 이상인 가구)
 - 수급자, 장애인, 20세 이하 자녀 둘 이상인 가구에 대한 감면 기준
-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23조의2)
 -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민법」에 따라 3년, 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 준용 조문 신설 (안 제26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 자구 수정,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 시행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연체금 및 독촉·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방법·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5조)

3. 금후계획

-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다. 예산수반 여부 : 부
- 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여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아. 입법예고 기간 : 2026. 6. 1. ~ 6. 22.(21일간)

4. 따로 붙임

- 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 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사. 관련 법령 발췌서
 - 「하수도법」, 「지방자치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아. 참고자료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자료
- 2024년 기준 행정구역별 현실화율
- 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 시·군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 2026년 기준 전북자치도 시·군별 하수도 요금 현황
- 2026년 기준 전북자치도 시·군별 하수도 요금 감면 현황
- 2026년 기준 전북자치도 시·군별 원인자부담금 현황
- 2025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권고
- 타 시·군 조례 발췌서(나주시)

자. 현행 조례

차. 방침결정문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하수관”을 “하수관로”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9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4항 단서 중 “다만, 시장”을 “다만,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로, “별표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로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별표 2의 업종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요금을 적용하고,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채납관리) 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제1호와 같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 납부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연체금 = 미납금 × (3/100) × (체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달 일수)

② 제1항의 연체금 징수 시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납부기한(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체납금(연체금 포함)을 제2항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①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 부담금 및 연체금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1항”을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로, “적용하여”를 “적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를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폐수의 유입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정한다”를 “산정하며, 원인자 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회”를 “수차레”로, “양”을 “양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별표6”을 “별표 6”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과시기: 건축행위 등에 대한 인·허가 접수 시 당해연도 고시된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를 “건축행위”로, “신축·증축·용도변경이”를 “건축행위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회”를 “수차레”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를 “건축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외한다)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을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한다.

제19조제6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감면
2. 존치기간 1년 미만 : 100분의 70 감면
3.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50 감면
4. 존치기간 3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30 감면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타공사”를 “타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하수발생량”을 “하수발생량 산정”으로 하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제2호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하수발생량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김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생활오수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에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정한 양과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 상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더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2. 단위단가: 별표 6에 따라 산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연도에 공고한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검사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당해연도에 공고된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 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김제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같은 조 제2항의 “별표7”을 “별표 7”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사용자에게 대하여 하수도 월 사용료에서 가정용 5m³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 5m³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로 한다”를 “각 호와 같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연체금 포함) :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및 그 밖의 징수금 :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과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관한 경우 2026년 10월 부과요금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26년 9월 부과요금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 및 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2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감면 신청을 하여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부터 적용하며, 신청일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 지]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 효율표

(제14조제2항 관련)

업종	사용구분 (m³)	단계별 인상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가정용	1~10	464	689	689	896	896	1,165
	11~20	596					
	21~30	661					
	31이상	1,069					
일반용	1~50	629	818	818	1,063	1,063	1,382
	51~100	1,086	1,412	1,412	1,836	1,836	2,387
	101이상	1,475	1,918	1,918	2,493	2,493	3,241
대중탕용	1~500	464	728	728	946	946	1,230
	501~1,000	568					
	1,001이상	661					
산업용	1m³당	596	775	775	1,008	1,008	1,310
일시 사용	1m³당	일반용 적용					

주 1. 단시일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되 하수가 불분명 할 경우 하수도
사용효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효율을 적용함

2. 기본효율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12조제1항)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³/일		※ 환경부고시 제2009 - 197('09.5.4.)호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검사	보완사항	2차검사	비고
					검사일자()		검사일자()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김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u>하수관</u> 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조문개정 2017.09.2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 ----- <u>하수관로</u> ----- ----- -. -----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 ③ (생략) ④ 「 <u>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법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생략)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9조----- ----- ----- ----- -----.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 ③ (생략)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u>다만, 시장</u> 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다만, 시장</u> ----- ----- -----.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제27조제5항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생략)

② 사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5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별표 2의 업종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요금을 적용하고,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략)

②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고지·징수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

제16조의2(체납관리) ① 시장은 사

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제1호와 같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 납부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연체금 = 미납금 × (3/100) × (체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달 일수)

② 제1항의 연체금 징수 시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납부기한(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체납금(연체금 포함)을 제2항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①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및 연체금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생략)

④ 제1항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9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후단
신설>

④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1호

제19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
담금) ① -----

--.

2.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
항에 따라 -----
 ----- 적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
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를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 이
경우 폐수의 유입 여부에 대해
서는 소관 부서와 미리 협의하

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 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가. (생략)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단서 신설>

4. (생략)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여야 한다.

3. -----

산정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수차례 -----

- 양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부과한다.

4. (현행과 같음)

5. -----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김제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2. 납부시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고 4회까지 분납 가능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

별표 6

② -----

-----.

1. 부과시기: 건축행위 등에 대한 인·허가 접수 시 당해연도 고시된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 건축물 -----

③ -----
-----.

1. 건축행위-----

수발생량에 대하여 신축·증축·용도변경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2.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10m³/일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그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하며,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행정행위가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④·⑤ (생략)

- ⑥ 가설건축물(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건축행위가 -----

-----.

2. 수차레----- 건축행위-----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 다음 각 호와 같이

----- 다만, 존

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된 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김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김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1.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감면

2. 존치기간 1년 미만 : 100분의 70 감면

3.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00분의 50 감면

4. 존치기간 3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30 감면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타행위-----

-.

1. 2.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하수발생량에 -----.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김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생활오수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에 해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생략)

2. 단위단가: 별표 6에 따라 산정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검사 전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고 4회까지 분납 할 수 있다.

<신설>

당 지역의 개발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정한 양과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더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나. (현행과 같음)

2. 단위단가: 별표 6에 따라 산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연도에 공고한 단위 단가를 적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당해연도에 공고된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4. (생략)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7과 같다.

<신설>

제22조(감면) ① -----

----- 단,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김제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 별표 7-----.

③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사용

제23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

<신 설>

자에 대하여 하수도 월 사용료에서 가정용 5m³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 5m³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의2(소멸시효) ----- 각 호와 같이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연체금 포함) :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및 그 밖의 징수금 :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6조(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접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수도사업소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전북김제025)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수도사업소-6752 (2026.6.1.) 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6A전북김제025) 1부. 끝.

교육가족과장 영

주무관	이미애	여성가족팀장	최남	교육가족과 과장	과 전결 2026. 6. 2.
협조자				장	김숙영
시행	교육가족과-19358	(2026. 6. 2.)	접수	수도사업소-6878	(2026. 6. 2.)
주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6	팩스번호	063-540-4016	/ tna.jvn6@korea.kr	/ 비공개(5,7)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전북김제025		
정 책 명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서명	수도사업소	
	담당자명	김다은	전화번호 063-540-384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6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수도사업소)	I. 개 요 ☐ 개정 목적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인상 및 누진제 폐지를 통해 요금을 현실화하고, 노후 하수도시설 정비와 하수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원인자부담금·채납관리·감면제도 등을 정비하여 하수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 및 가정용·대중탕용 누진제 폐지 - 사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의 채납관리 및 신용카드 납부 규정 신설 - 건축물 및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부과시기·납부방법 정비가설 건축물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 신설 -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 확대 - 소멸시효 및 준용규정 정비 - 자구 수정 및 관련 규정 정비 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5.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7. 성별 통계 관련 조항 : 해당없음 8. 성별 통계 개선안 : 해당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6월 02일 김제시 복지환경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이미애/063-540-6906) 수도사업소장 귀하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김제시 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의견 조회 결과보고

수도사업소-6754(2026.6.1.)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부서의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회기간 : 2026.6.1.(월) ~2026.6.19.(금)(19일간)
2. 조회방법 : 공문발송
3. 조회결과 : 의견없음
4. 보고자의견 :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의견 제출이 없으므로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끝.

주무관	김다은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수도사업소 전결 2026. 6. 22.
협조자				소장 전재영
시행	수도사업소-7803			접수
우	5439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328, 2층, 수도사업소 (검산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847	팩스번호	063-540-3968	/ kde4520@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김제시 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6.1. ~ 2026.6.22.(21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취지 및 내용
4.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향후계획 : 이후 행정절차 정상 진행. 끝.

주무관	김다은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수도사업소 전결 2026. 6. 23.
협조자				소장 전재영
시행	수도사업소-7823			접수
우	5439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328, 2층, 수도사업소 (검산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847	팩스번호	063-540-3968	/ kde4520@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8621(2026.6.26.)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26. 6. 25.(목) 09:20
2. 개최장소 : 부시장실
3. 참석위원 : 10명
4. 심의안건 : 총 8건(조례 7, 규칙 1)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8건

연번	심의 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의결결과
계 총 8건 (조례 7, 규칙 1)				
1	2026-29	행정지원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축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30	세 정 과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31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2026-32	교육가족과	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5	2026-33	스마트유통과	김제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6	2026-34	기술보급과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7	2026-35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8	2026-36	수도사업소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교육가족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스마트유통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기술보급과장), 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재현

의회법무팀장 이예라

기획감사실장 전길 2026. 6. 29.
이영호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8673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영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kirus@korea.kr

/ 부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 「하수도법」 제3조, 제61조, 제65조, 제73조

하수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12. 27.>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20. 5. 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2021. 1. 5.>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 5.]

□ 관련 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관련 법령 발췌서 : 「민법」 제163조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관련 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조, 제2조,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 2026. 3. 31.]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8. 4.]

□ 관련 법령 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1. 8. 4.]

□ 관련 법령 발췌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9호, 2026. 2. 5., 일부개정]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3. 24.>

□ 관련 조례 발췌서 :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4조, 제35조의2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5. 8. 8.]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조례 제1791호, 2025. 8. 8., 일부개정]

제34조(체납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다음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5.8.8.>

1. 연체금 = 미납요금 $\times$ (3/100) $\times$ (체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달 일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5.8.8.>

③ 체납금(연체금 포함)을 제2항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8.8.>[제목개정 2025.8.8.]

제35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12.2 조례871>

□ 참고자료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전북권 40대 도시로 운영하는 김제



김 제 시



수신 수도권사업소장

(경유)

제목 2025년 제1회 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경제진흥과-8227(2025. 2. 27.)호와 관련하여 2025년 제1회 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 결과

연번	소관부서	안 건 명	결 과
1	수도사업소	[심의안건 1] 김제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건	원안가결
2		[심의안건 2] 김제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건	원안가결

끝

경 제 진 흥 과장

주무관 나세영

경제지원팀장 이윤기

경제진흥과장 2025. 3. 7.
이영복

참조자

시행 경제진흥과-9318

(2025. 3. 7.)

접수 수도권사업소-2808

(2025. 3. 7.)

우 5438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왕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882

팩스번호 063-540-3448

/ net2120@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획도시 김제

□ 참고자료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자료

김제시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 (안)

I 필요성

- 김제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0%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내구연수 도래된 노후관 정비 공사 등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 지연
- 가정용, 대중탕용 누진제 폐지하여 “m³당 요금” 제시
 - 현행 누진제도는 다인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상충됨(구성원이 많을수록 1인당 부담액 요율 증가)

II 현황

- 현행 요금체계 : 2024년 평균요금 697원/m³
-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2023년 기준, 결산자료) : 6.0%(김제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사용료수익(백만원)	746	1,123	1,701	2,293	2,420	
연간정량(천톤)	5,993	5,995	6,076	5,916	6,196	
총괄원가(백만원)	36,334	36,883	36,963	39,194	40,448	
결함액(백만원)	35,588	35,760	35,262	36,901	38,028	
m ³ 당 요금(원) (A)	124.4	187.4	279.9	387.7	390.6	
m ³ 당 원가(원) (B)	6,062.2	6,152.0	6,083.6	6,625.3	6,528.1	
요금현실화율(%)	2.1	3.0	4.6	5.9	6.0	(A)/(B)
인상요인(%)	4772.1	3183.0	2073.3	1609.0	1571.3	

- 하수도공기업 경영성과 및 재정여건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익	비 용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19년	14,013	33,285	△28,812	△19,272
2020년	14,280	32,557	△29,007	△18,277
2021년	14,884	32,594	△28,626	△17,710
2022년	15,554	34,656	△30,261	△19,102
2023년	15,831	35,831	△31,479	△20,000

● 전북 시지역 요금 현실화율 비교 (2022년 기준, 통계자료)

구 분	현실화율 (%)	m ³ 당요금 (원)	m ³ 당원가 (원)	비 고(조정년도)
전주시	68.7	683.1	993.1	2015년~2017년 3개년인상 (30%-25%-15%)
군산시	54.5	1,090.3	1,997.4	2018년~2023년 매년 25%인상 2021년 코로나 인상유보
익산시	30.5	878.0	2,876.5	2024~2028년 매년10%인상
정읍시	28.8	1,089.1	3,779.8	2016~2018년 매년 58% 인상
김제시	5.9	393.4	6,631.0	2020년~2024년 5개년 인상 (60%-50%-40%-30%-20%)
남원시	12.7	633.5	4,951.7	2021년~2023년까지 매년 17%인상

* 요금 현실화율(2022년 기준) : 전국 평균(46.6%), 전북 평균 (41.1%),

전북 시지역 평균(33.5%)

* 전북 시군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붙임 1]

III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

● 요금 개편 제시(안) -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구 분		현실화율		
		제1안	제2안	제3안
요금인상율		목표현실화율21.7% [격년 30.0%인상]	목표현실화율24.6% [매년 20.0%인상]	목표현실화율36.7% [매년 30.0%인상]
인상전	2023년	5.9%		
인상후	2025년	12.7%	11.7%	12.7%
	2026년	12.7%	14.1%	16.6%
	2027년	16.6%	17.0%	21.6%
	2028년	16.6%	20.5%	28.2%
	2029년	21.7%	24.6%	36.7%

● **요금 개편 결정(안) - 검토결과 최종안**

구 분		인상율	현실화율	예상사용료수익
인상전	2023년		5.9%	3,910백만원
인상후	2025년	30%	12.7%	5,053백만원
	2026년	-	12.8%	5,053백만원
	2027년	30%	16.6%	6,530백만원
	2028년	-	16.7%	6,530백만원
	2029년	30%	21.7%	8,437백만원

● **하수도요금 인상(안) : 격년 30.0% 인상 + 가정용, 대중탕용 누진제 폐지**

현행(2024년)			인상 시 요금				
업종	사용량(㎥/월)	요금(원)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가정용	1~10	464	689	689	896	896	1,165
	11~20	596					
	21~30	661					
	31이상	1,069					
일반용	1~50	629	818	818	1,063	1,063	1,382
	51~100	1,086	1,412	1,412	1,836	1,836	2,387
	101 이상	1,475	1,918	1,918	2,493	2,493	3,241
대중탕용	1~500	464	728	728	946	946	1,230
	501~1,000	568					
	1,001 이상	661					
산업용	1㎥ 당	596	775	775	1,008	1,008	1,310

IV 실무부서 의견

【쟁점사항】

- 민생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자제 권고(행안부)
- 하수도요금인상시 주민부담증가

【검토 의견】

- 하수도 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을 위한 최소의 투자재원 마련, 생산원가와 판매단가 차액 보전을 위한 요금인상 및 현실화 필요
- 요금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격년제 요금 조정 필요
⇒ 격년제 (5년간 90% 인상) : 25년(30%), 27년(30%), 29년(30%)
⇒ 각종 감면 방안 조례개정 추진 및 적극적인 홍보

V **그간 추진상황**

- 하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 : '24. 5. 24. ~ 11. 23.
- 하수도요금 현실화방안 계획보고(시장님): '24. 11.

VI **금후계획**

- 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25. 2.
- 하수도요금 조정(인상)안 의회 보고(간담회) ----- '25. 3.
- 조례규칙 심의회(김제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 '25. 4.
- 김제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의회 상정 ----- '25. 5.

붙임 1. 전북 시군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2. 요금체계 개선(안)에 따른 요금부담액(누진제 폐지시 요금부담액)

3. 도내 하수도 요금 현황

□ 참고자료 : 2024년 기준 행정구역별 현실화율

시·도	m ³ 당 요금 (원/m ³)	m ³ 당 원가 (원/m ³)	현실화율(%)
전국('24년)	696.3	1,537.6	45.3
서울특별시	690.2	1,257.8	54.9
부산광역시	752.4	1,057.3	71.2
대구광역시	620.2	836.2	74.2
인천광역시	710.7	928.7	76.5
광주광역시	61.3	975.9	62.5
대전광역시	706.9	721.2	98.0
울산광역시	886.2	1,150.3	77.0
세종특별자치시	1,106.7	2,825.3	39.2
경기도	701.4	1,445.4	48.5
강원특별자치도	696.5	3,035.7	22.9
충청북도	875.2	2,144.8	40.8
충청남도	696.3	2,930.6	23.8
전북특별자치도	790.3	2,440.9	32.4
전라남도	533.1	2,275.5	23.4
경상북도	489.6	2,012.8	24.3
경상남도	662.5	1,734.9	38.2
제주특별자치도	913.8	3,134.3	29.2

□ 참고자료 : 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 시·군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시·도	연간 조정량 (천 m ³)	사용료 수익 (백만원)	m ³ 당 요금 (원/m ³)	m ³ 당 원가 (원/m ³)	총괄 원가 (백만원)	현실화율 (%)
전북특별 자치도	190,042	150,188	790.2	2,440.9	463,876	32.3
전주시	82,301	56,745	689.4	1,107.3	91,136	62.2
군산시	37,840	44,699	1,181.2	2,168.2	82,048	54.4
익산시	23,830	22,605	948.6	3,019.1	71,947	31.4
정읍시	10,278	11,143	1,084.1	4,146.1	42,617	26.1
남원시	6,318	5,102	807.4	5,758.7	36,388	14
김제시	6,154	3,013	489.5	7,541.5	46,418	6.4
진안군	1,911	258	135	2,083.6	3,982	6.4
완주군	6,849	1,317	192.2	212.9	1,458	90.2
무주군	2,252	490	217.6	320.8	722	67.8
장수군	1,264	136	107.9	2,000.6	2,529	5.3
임실군	1,732	797	460.4	574.4	995	80.1
순창군	1,177	231	196.9	348.2	410	56.5
고창군	4,557	802	176	7,017.7	31,987	2.5
부안군	3,572	2,845	796.4	14,343.1	51,233	5.5

□ 참고자료 : 2026년 기준 전북자치도 시·군별 하수도 요금 현황

(기준 : 2026. 5월)

시·군	하수도 요금 부과 (단위: 원/톤)				인상 이력	인상계획	추진 단계
	가정용	일반용	육탕용	산업용			
전주시	400	1,250	580	510	·3개년인상 (15년 30%, 16년 25%, 17년 15%)	인상계획없음	
군산시	820	1,190	1,020	1,095	·5개년 인상 (18년~23년 매년25%인상) 21년 코로나인상유보	인상계획없음	
익산시	740	1,900	800	840	·5개년 매년 10%인상 (2024~2028)	2028년까지 인상	
정읍시	900	1,530	12,70	720	·2개년 매년 58%인상 (2016~2018)	인상계획없음	
남원시	543	1,172	756	629	·2개년 매년 17%인상 (2021~2023)	인상계획없음	
김제시	464	629	464	596	·5개년 인상 (20년 60% 21년 50% 22년 40% 23년 30% 24년 20%)	요금인상추진 계획	
완주군	150	240	250	160	-	인상계획없음	
진안군	110	130	120	110	-	요금인상용역 추진중	
무주군	150	220	220	150	-	인상계획없음	
장수군	73	130	120	-	-	인상계획없음	
임실군	301	531	437	286	· 18%인상(2018-2019)	인상계획없음	
순창군	100	260	130	150	-	인상계획없음	
고창군	80	150	260	165	-	인상계획없음	
부안군	425	845	500	825	· 2개년 매년 23%인상 (2016-2018)	인상계획없음	

□ 참고자료 : 2026년 기준 전북자치도 시·군별 하수도 요금 감면 현황

구분	김제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재난지역	○	○	○	○	○	○	○
재난위기 경보발령		○	○	○	○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자		○	○	○	○	○	
다자녀 3인 이상 (만19세 미만)		○		○	○	○	
다녀 2인이상 (만18세 미만)		○	○				
장애인 및 장애복지시설		○	○	○	○	○	
중수도	○	○	○		○	○	○
빗물	○	○	○		○	○	○
재처리수	○	○	○	○	○	○	○

□ 참고자료 : 2026년 기준 전북자치도 시·군별 원인자부담금 현황

시·도	개별건축물 하수원인자 부담금 (원/㎡)	타행위 하수원인자부담금 (원/㎡)	비고
전주시	1,940,000	-	
군산시	1,597,730	-	
익산시	1,412,000	-	
김제시	1,870,920	5,197,000	
정읍시	1,961,100	-	
남원시	1,727,150	-	
완주군	1,349,890	-	
진안군	1,452,000	-	
무주군	1,359,160	-	
장수군	1,534,000	-	
임실군	1,412,000	8,558,000	
순창군	1,381,000	-	
고창군	1,398,500	-	
부안군	1,347,000	-	

□ 참고자료 : 2025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권고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10. 8.(수) - 10. 12.(일), 2025 국제종자박람회 10.22.(수) - 10.24.(금)



김 제 시



수신 수도사업소장
(경유)

제목 2025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①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②
수도 급수 조례③하수도 사용 조례)개선 검토 의견 제출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비사)-2(2025. 9. 29.)호 및 도 자치제도과-4632 (2025. 9. 30.)호와 관련됩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해 소관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은 '2025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지방규제(조례·규칙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개선대상 과제를 건의하오니, 소관부서에서는 불임 양식에 따른 검토의견을 2025. 10. 17. (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수도급수 조례 개선 검토 요청 1부.
2. 하수도 사용 조례 개선 검토 요청 1부. 끝.

기 획 감 사 실 장



주무관 이재현

의회법무팀장 이해라

기획감사실장

전결 2025. 10. 13.
이명호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15187

(2025. 10. 13.)

접수 수도사업소-14580

(2025. 10. 13.)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kirus@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번호	과제명	건의내용
1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허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
2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가산금 산정방식 개선	○ 연체금 등 산정기준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 마련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납부 허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
4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근거 마련	○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 이외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준치기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차등 부과

□ 참고자료 : 타 시 · 군 조례 발췌서(나주시)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5. 11. 6.]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385호, 2025. 11. 6., 일부개정]

제1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0. 7. 15.>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0.]

제18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0. 7.

15.>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은 준공 신청시 부과하며 건축물 용도변경은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부과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준공(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전으로 하고,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에 해당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7. 15.>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7. 15.>

④ 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신설 2025.11.6.>

1. 존치기간 1년 미만: 100분의 70 감면
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50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30감면

제23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신설 2025.11.6.>

□ **현행 조례**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2022.03.18 조례 제14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조문개정 2017.09.29.>

제3조 <삭제 2017.09.29.>

제4조 <삭제 2017.09.29.>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6조 <삭제 2017.09.29.>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9.>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개정 2016. 7. 15.>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 <개정 2016. 7. 15.>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7. 15.>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직원이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를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6. 7. 15.>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2. 10. 1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9.>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7. 9. 29.]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 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를 지나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9. 29., 2021. 2. 25.>

② 사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5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9. 29.>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

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
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조문개정 2017.9.29.>

제15조의2< 삭제 2017.9.29.>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고지·징수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17.9.29.>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9.>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8. 7.>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
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점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표4의 기
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9. 29.>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
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하고, 1개월이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로 계산한다. <단서 신설 2017.9.29.>

③ <삭제 2017.9.29.>

④ <삭제 2017.9.29.>

제19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따른 원인자부담
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9.>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
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다. <개정 2017. 9. 29.>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9. 29.>

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
변경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
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

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17. 9. 29.]

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등의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김제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6. <삭제 2017.9.29.>

7. <삭제 2017.9.29.>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2. 납부시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고 4

회까지 분납 가능

[본조신설 2017. 9. 29.]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신축·증축·용도변경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2.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10m³/일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그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하며,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행정행위가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개정 2017. 9. 29.]

④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7. 9. 29.>

⑤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

017. 9. 29.>

⑥ 가설건축물(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2. 10. 19.>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③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시설물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고 4회까지 분납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9. 29.>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김제시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김제 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 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별표 6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검사 전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의 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고 4회까지 분납 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17.9.29.>

제22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9.><일부개정2014.11.17 조례91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2. 10. 19.>

2.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2. 10. 19.>

3.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일부개정 2021. 2. 25.>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14.11.17 조례917>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12. 10. 19., 2021. 2. 25.>

제2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2. 3. 18.>

[개정 2021. 2. 25.]

제23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

[조문신설 2021.02.25.]

제24조 <삭제 2017.9.2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7.15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5.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7.9.29. 조례 제1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9.8.7. 조례 125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제1367호 2021.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12조제1항)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관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³/일		※ 환경부고시 제2009 - 197('09.5.4.)호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사항목				1차검사	보완사항	2차검사	비고
					검사일자()		검사일자()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별표 1] <개정 2019.8.7.>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

(제14조제2항 관련)

업 종	사용구분 (m³)	누진체계 개선후 요금 (원)	단계별 인상후(년60~20%) / 5개년)				
			‘20년 (60%)	‘21년 (50%)	‘22년 (40%)	‘23년 (30%)	‘24년 (20%)
가 정 용	1~10	89	142	213	298	387	464
	11~20	114	182	273	382	497	596
	21~30	126	202	303	424	551	661
	31이상	204	326	489	685	891	1,069
일 반 용	1~50	120	192	288	403	524	629
	51~100	207	331	497	696	905	1,086
	101이상	281	450	675	945	1,229	1,475
대 중 탕 용	1~500	89	142	213	298	387	464
	501~1,000	108	173	260	364	473	568
	1,001이상	126	202	303	424	551	661
산 업 용	1m³당	114	182	273	382	497	596
일 시 사 용	1m³당	일반용 적용					

주 1. 단시일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

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되 하수가 불분명 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율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별표 2] <개정 2019.8.7.>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제14조제2항 관련)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제곱미터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된 사업장

[별표 3] <개정 2019.8.7.>

수질하수도사용료

(제14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물질)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 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별 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오수량 : m³/일)

구 분	최초 행정행 위시 오수발 생량(A)	1차 증축 · 용도변경				2차 증축 ·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 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 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riangleright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7] <일부개정 2021.02.25.>

빗물이용시설 · 중수도 ·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2조제2항 관련)

구분 업종	감면비율
가 정 용	30%
일 반 용	“
대중탕용	“
산 업 용	“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

□ 방침결정문

등록번호	수도사업소 6534
등록일자	2026. 5. 27.
보존기간	5년
공개구분	비공개 (b)

외도발생 시 책임은
비상하는 김제

주무관	팀 장	소 장	국 장	김 제 시 장 관 한 대 행 부 시 장	결 재
김다운	강현우	진세영	정영진	이종석	
협 조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이영호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2026. 5.



김 제 시
수도사업소